

사전감사대상

문서번호	자자 5011- 625		감 사 76	
처리기한	1995. .	보존기간	이 사 부총재 총 재 12/15	
기 안	1995.12. 15	영구		
발 신	1995. .			
조사역	과 장 부부장 부 장			
기 안 자	김 재 호	합	전 결 근 거 『직무권한 분류표』 제1장 제1절 제1항 제4호	
소 속	자 금 부 자 금 과	(법규과)기획부장		
직 위	행원(종) 전화 4503			
수 신				
참 조				
제 목	「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 등 개정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중 금융기관의 편중여신관리 관련 규정이 기존의 은행감독 규정을 통폐합하여 새로 제정하는 「금융기관 감독규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세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 개정(안) 1부 2.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상업어음할인 취급세칙」 개정(안) 1부 3.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개정(안) 1부 4.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소재·부품 생산자금대출 취급세칙」 개정(안) 1부 5.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지점별 한도 운용세칙」 개정(안) 1부 6.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운용세칙」 개정(안) 1부. 끝.				
사본수신처 한국은행 행내 021-10('80.11.19) ()				
(결재서식)		발 송 인 연 혁 기 록 필 요 불 요 타 자		

(붙임3)

「韓國銀行 總額限度貸出關聯 貿易金融 取扱細則」改正(案)

現 行	改 正 (案)	備 考
第1章 總 則 제1조~제3조 (생 략) 제4조(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이 세칙에서 중소기업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제5조에서 정하는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는 중소기업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3. (생 략) ② (생 략) 제5조~제6조 (생 략) 第2章 一般輸出入金融 제7조(융자대상) ① 일반수출입금융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취급한다. 다만,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제5조에서 정하는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이하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라 한다)는 제외한다. 1.~3. (생 략) ② (생 략) 제8조~제11조 (생 략) 제12조(융자한도) ①~⑦ (생 략) ⑧ 융자취급은행은 한국은행 업무부장의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거나 융자취급은행을 관할하는 한국은행 업무부장 또는 지점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융자 취급할 수 있다.	第1章 總 則 제1조~제3조 (현 행 과 같 음) 제4조(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이 세칙에서 중소기업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하는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는 중소기업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3. (현 행 과 같 음) ② (현 행 과 같 음) 제5조~제6조 (현 행 과 같 음) 第2章 一般輸出入金融 제7조(융자대상) ① 일반수출입금융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취급한다. 다만,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하는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이하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라 한다)는 제외한다. 1.~3. (현 행 과 같 음) ② (현 행 과 같 음) 제8조~제11조 (현 행 과 같 음) 제12조(융자한도) ①~⑦ (현 행 과 같 음) ⑧ 융자취급은행은 한국은행 자금부장의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거나 융자취급은행을 관할하는 한국은행 자금부장 또는 지점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융자 취급할 수 있다.	- 규정개편에 따른 조문정비 ” - 조직개편에 따른 조문정비

現 行	改 正 (案)	備 考
제13조(융자한도의 산정) ① (생 략) ② 제12조에서 정하는 업체별 평균가득률 또는 평균원자재 의존율은 한국은행 업무부장 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래 외국환은행이 산정한다.	제13조(융자한도의 산정) ① (현 행 과 같 음) ② 제12조에서 정하는 업체별 평균가득률 또는 평균원자재 의존율은 한국은행 자금부장 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래 외국환은행이 산정한다.	- 조직개편에 따른 조문정비
제14조~제15조 (생 략) 제16조(융자기간) ①~③ (생 략)	제14조~제15조 (현 행 과 같 음) 제16조(융자기간) ①~③ (현 행 과 같 음)	
④ 융자취급은행은 한국은행 업무부장 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거나 융자취급은행을 관할하는 한국은행 업무부장 또는 지점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이미 취급한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융자취급은행은 한국은행 자금부장 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거나 융자취급은행을 관할하는 한국은행 자금부장 또는 지점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이미 취급한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7조(융자취급의 제한) (생 략) 제18조(융자취급은행의 제한) ① (생 략)	제17조(융자취급의 제한) (현 행 과 같 음) 제18조(융자취급은행의 제한) ① (현 행 과 같 음)	
② 하나의 수출신용장 등과 관련된 수출입승인, 무역금융의 취급 및 수출대금의 영수는 동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당해 외국환은행을 관할하는 한국은행 업무부장 또는 지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하나의 수출신용장 등과 관련된 수출입승인, 무역금융의 취급 및 수출대금의 영수는 동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당해 외국환은행을 관할하는 한국은행 자금부장 또는 지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第3章 建設・用役輸出金融	第3章 建設・用役輸出金融	
제19조~제21조 (생 략) 제22조(융자기간) ①~③ (생 략)	제19조~제21조 (현 행 과 같 음) 제22조(융자기간) ①~③ (현 행 과 같 음)	
④ 융자취급은행은 한국은행 업무부장 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거나 융자취급은행을 관할하는 한국은행 업무부장 또는 지점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이미 취급한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융자취급은행은 한국은행 자금부장 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거나 융자취급은행을 관할하는 한국은행 자금부장 또는 지점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이미 취급한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23조(준용규정) (생 략)	제23조(준용규정) (현 행 과 같 음)	

現 行	改 正 (案)	備 考
第4章 農水産物輸出準備資金貸出 제24조~제25조 (생 략) 제26조(용자대상품목 및 용자기간) 농수산물 수출준비자금대출의 용자대상품목과 용자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용자취급은행을 관할하는 한국은행 업무부장 또는 지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미 취급한 용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하 생 략) 제27조(용자금액) (생 략) 第5章 內 國 信 用 狀 제28조(개설대상) (생 략) 제29조(개설한도) ①~⑦ (생 략) ⑧ 용자취급은행은 한국은행 업무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거나 용자취급은행을 관할하는 한국은행 업무부장 또는 지점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제3항 단서조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30조~제32조 (생 략) 第6章 事後管理 및 制裁 제33조~제34조 (생 략) 제35조(제재) ① 외국환은행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제재대상자로 하여 한국은행 업무부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업체의 주거래외국환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1.~3. (생 략) ② (생 략) ③ 한국은행 업무부장 또는 지점장은 이 세칙을 위반한 외국환 은행에 대하여 대출한도 감축 또는 기대출금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第4章 農水産物輸出準備資金貸出 제24조~제25조 (현 행 과 같 음) 제26조(용자대상품목 및 용자기간) 농수산물 수출준비자금대출의 용자대상품목과 용자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용자취급은행을 관할하는 한국은행 자금부장 또는 지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미 취급한 용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 행 과 같 음) 제27조(용자금액) (현 행 과 같 음) 第5章 內 國 信 用 狀 제28조(개설대상) (현 행 과 같 음) 제29조(개설한도) ①~⑦ (현 행 과 같 음) ⑧ 용자취급은행은 한국은행 자금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거나 용자취급은행을 관할하는 한국은행 자금부장 또는 지점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제3항 단서조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30조~제32조 (현 행 과 같 음) 第6章 事後管理 및 制裁 제33조~제34조 (현 행 과 같 음) 제35조(제재) ① 외국환은행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제재대상자로 하여 한국은행 자금부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업체의 주거래외국환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1.~3. (현 행 과 같 음) ② (현 행 과 같 음) ③ 한국은행 자금부장 또는 지점장은 이 세칙을 위반한 외국환 은행에 대하여 대출한도 감축 또는 기대출금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조직개편에 따른 조문정비 " " "

現 行	改 正 (案)	備 考
第7章 補 則 제36조(보고) ① (생 략) ② 한국은행 업무부장 또는 지점장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무역 금융과 관련된 세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위임)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은행 자금부장이 정한다. 다만, 제35조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은행 업무부장이 정한다. (신 설)	第7章 補 則 제36조(보고) ① (현 행 과 같 음) ② 한국은행 자금부장 또는 지점장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무역 금융과 관련된 세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위임)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은행 자금부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96.1.1부터 시행한다.	- 조직개편에 따른 조문정비 " · 단서삭제 - 시행일자 명시